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45
----------	-----

2021. 6. 23.(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윤남진 의원 등 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6월 9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남진 의원)

가.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산업화 시대로의 효율적 대응 및 신성장 동력 기반마련을 위한 추진근거 등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빅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명시(안 제6조)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분석기술이 민간 및 공공부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
- 지난해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주요변경내용 : 다수의 법에 중복 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3종류로 구분함 그 중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 연구, 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형디지털 뉴딜정책 및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산업화 시대로의 효율적 대응 필요
- 빅데이터 산업 관련 사업 추진 및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 등 충북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나. 주요 검토내용

- 빅데이터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괄

현행	개정안
<u>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u>	<u>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u>
	<u>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u>
	↳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을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데이터산업 육성 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빅데이터, 데이터산업에 대한 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
제4조(적용범위) ▶ 삭제 ↳ 불필요한 조항 정비	제4조(기본계획 수립) ↳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의무와 내용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삭제 ↳ 불필요한 조항 정비	제5조(빅데이터산업 활용)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 개정 제4조	제6조(데이터산업 육성) ▶ 신설 ↳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가능 사업 명시
제7조(빅데이터 실태조사) ▶ 삭제 ↳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정비	제7조(위원회 설치)
제8조(빅데이터책임관) ▶ 삭제 ↳ 현 상황을 반영하여 정비(활용도 미미)	제8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개정 제7, 8조	제9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 개정 제9조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 개정 제10조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개정 제11조	제12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센터 설치 근거 및 수행업무, 운영 위탁 근거 명시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까지 포함하여 수행)
제13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개정 제12조 ↳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정비	제13조(예산의 지원) ▶ 신설 ↳ 예산지원 근거 마련(조문 정비)
제14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 삭제 ↳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삭제(개정안은 민간데이터 관련임)	제14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제15조(빅데이터의 활용) → 개정 제5조	제15조(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6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삭제 ↳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정비	제16조(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7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등) → 개정 제12조	
제18조(사무의 위탁) ▶ 삭제 ↳ 개정안 제12조에 포함	
제19조(빅데이터 실태 점검·평가) ▶ 삭제 ↳ 위원회 수행 업무와 중복	
제20조(포상) ▶ 삭제	
제21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개정 제15조	
제22조(시행규칙) → 개정 제14조	
부칙	부칙

-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함
(현행)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와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1)”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빅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음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 안 제6조는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명시함
 - 안 제7조, 제8조는 데이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는 기본 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시도별 빅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구분	센터명	규모	인력	운영
서울	빅데이터캠퍼스 (16. 7.)	에스플렉스센터 15층(557m) (서울 상암동)	7명	직영
부산	빅데이터캠퍼스 (16. 7.)	부산정보산업진흥원 內 - 오픈개발실, 회의실, 테스트베드존	6명	위탁
대구	빅데이터활용센터 (19. 1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內 - 활용센터, 분석실, 회의실	4명	위탁
경기	(前)경기 빅파이센터 (16. 3. ~ 18. 12.)	경기콘텐츠진흥원 內 ※ TF형태 유지(경기데이터드림 운영)	6명	직영
제주	제주 빅데이터센터 (19. 7.)	제주테크노파크 內 - 데이터랩실, 일반분석실, 교육장	5명	위탁
경남	경남 빅데이터센터 (21. 7 개소예정)	경남연구원 內 - 분석실, 교육장, 회의실	4명	위탁
충남	충남 빅데이터센터 (22년 구축예정)	위탁기관 검토 중	-	-

- 안 제14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축적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데이터는 4차 산업 시대에서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비대면 경제를 이끌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도에서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AI(인공지능)·빅데이터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신성장 산업국으로 이관하고, 데이터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도 데이터 산업 육성 추진 사업

- 데이터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1. 3. ~ 8. / 8천만원
 -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 '21. 2. ~ 10. / 10억원
 -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공모 결과 : 7개 사업 선정, 국비 14억원 확보
- 본 조례안은 데이터산업 관련 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도 차원에서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과정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데이터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도지사는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산업 육성)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데이터산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도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除斥)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동향 등 실태조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빅데이터 처리 및 실태조사 시 성별분리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인력 양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성장동력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임

2. 비용 발생 요인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빅데이터의 활용), 제6조(데이터산업 육성), 제12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 빅데이터센터 운영비 지원

나. 추계결과 : 2021년부터 5년간 세출 29.8억원 정도 소요

- 기본계획 수립 : 180,000천원(도비 100%)
- 분석사업 추진 : 800,000천원(국비 100%)
-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 1,6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빅데이터센터 운영비지원 : 400,000천원(도비 1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1,600,000천원(54%), 도비 1,380,000천원(46%)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 입	80,000	700,000	700,000	700,000	800,000	2,980,000	
국비(54%)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도비(46%)	80,000	300,000	300,000	300,000	400,000	1,380,000	
세 출	80,000	700,000	700,000	700,000	800,000	2,980,000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80,000				100,000	180,000	
빅데이터 분석사업추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00,000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빅데이터센터 운영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재원조달	80,000	700,000	700,000	700,000	800,000	2,980,000	
의존 재원	소 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보조금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	300,000	300,000	300,000	400,000	1,380,000
	지방세	80,000	300,000	300,000	300,000	400,000	1,380,000